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경영인정기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 가. 무배당 경영인정기보험 (평균형)
- 나. 무배당 경영인정기보험 (56 세 체증형)
- 다. 무배당 경영인정기보험 (66 세 체증형)
- 라. 무배당 경영인정기보험 (76 세 체증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90 세만기	전기납	평균형	25 세-50 세	월납, 3 개월납, 6 개월납, 연납
		56 세 체증형	25 세-50 세	
		66 세 체증형	25 세-60 세	
		76 세 체증형	25 세-70 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하지 않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되는 경우에는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점의 표준이율로 할인된 보험료를 받으며, 최대 12 개월분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나.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13. 전환특전

-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회사에서 정하는 중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전환 당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나.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나이가 전환일 현재 전환 후 계약의 가입나이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다.
- 다. 보험계약일로부터 2 년 이내 또는 보험기간 만료 전 2 년 이내에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할 수 없다.
- 라.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 이 계약을 전환할 경우나 전환 이전에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전환 이후에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회사는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다.
- 마.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 바. 전환 후 계약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4. 기타

- 가. 회사는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 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약관 및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다. 약관 제 20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2 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라.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 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